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581 호 2026. 9. 22.(화)

조 레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91호[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92호[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93호[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97호[도시계획시설(도로소1-137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1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98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7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99호[하천 점용허가 공고 요청(26-67)]..... 18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200호[하천 점용허가 공고 요청(26-68)]..... 19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69호[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허가26-60호)]..... 20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	--	--	--	--	--

회 람								
-----	--	--	--	--	--	--	--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진** (인)

2026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91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후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의 총괄부서는 기획예산실로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 ③ 공약사업별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관리하게 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해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안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 사업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 공약사항 취지 부합 여부
 2.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3. 현황 분석과 전망
 4. 국가 및 울산광역시 계획과의 조화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마련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확정된 실천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한다.
- ④ 실천계획은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확정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천계획 변경안은 제9조제1호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분기별로 종합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

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평가 또는 보고회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다만, 공약이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구민을 대상으로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별 인구분포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심의
2. 공약사항 이행실적 평가
3. 그 밖에 공약사항 이행에 관한 개선의견 제시

제10조(회의) ① 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방법 및 환류) ① 공약사항 이행평가는 당초 공약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서면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공약사항 이행평가를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구민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평가단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12조(수당)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공개) 구청장은 공약사항과 실천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 공약사항 추진상황 및 이행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공약사항 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현 「울산광역시 북구 공약사항 관리 지침」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약 관리체계를 제도화하고 공약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
- 지침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제1조 ~ 제2조)
- 나. 공약사항 관리체계(제3조)
- 다. 공약사항의 확정 및 실천계획 수립(제4조 ~ 제5조)
- 라. 공약사항 실천계획 변경 절차(제6조)
- 마. 공약사항 이행 점검(제7조)
- 바.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제8조 ~ 제10조)
- 사. 평가결과 환류 및 공개 등(제11조 ~ 제1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진** (인)

2026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9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에서 발행하는 인쇄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2. 구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초청
3. 구 시책 홍보 또는 고향사랑기금 사업 자료 등 발송

4. 연하장 또는 감사 편지 발송

5.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기부 활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행사·이벤트 등 추진

2.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의 참여자 및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경품(상품권 포함), 시상금(상품권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 신설(제24조)
- 나. 기부 활성화 사업 추진 조항 신설(제25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동 씨 (인)

2026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93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재난 수습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재난 수습 등의 업무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 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울산광역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시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세부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 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시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고”를 “구성할 수 있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할 소방서의 재난 현장대응 업무총괄 부서장(해양재난의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의 재난 현장대응 업무총괄 부서장)

4. 관할 경찰서의 재난 현장대응 지원 부서장

제1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할 소방서장(해양재난의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

5. 관할 경찰서장(재난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제23조제2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재난발생 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정비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2.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제9조의2)

- 필요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 필요시 울산광역시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요청
-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 편성·운영 가능

나.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기관에 관할소방서, 해양경찰서, 경찰서 추가(제10조제3항, 제14조제2항)

다.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 주문 정비(제2조, 제23조)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19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1-137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82호(2026.04.16.) 및 제2026-141호(2026.07.02.)로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1-137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153-8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1-137호선)사업

○ 명 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소1-137호선)사업

다. 사업규모 : 도로 L=97m, B=10~16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식회사 모바일테크 대표이사 전수근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 6길 21, 906호(우정동 우정혁신타워)

마. 사업기간 : 인가고시일 ~ 2027. 06.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2. 취소사유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 청취 절차 이행이 필요하여 절차 이행을 위해 취소 고시함.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 052-241-7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현황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북구 달천동	153-8	대	8.0	8.0	류○관	울산광역시 북구 아랫마을길 20-10(달천동)				
2	북구 달천동	153-9	대	1.0	1.0	류○관	울산광역시 북구 아랫마을길 20-10(달천동)				
3	북구 달천동	159-7	임	18.0	18.0	문○이	울산시 동동 748				
4	북구 달천동	227-4	도	15.2	15.2	울산광역시 북구					
5	북구 달천동	153-7	대	13.0	13.0	주식회사 모바일테크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43 (연암동)				
6	북구 달천동	159-6	임	16.0	16.0	주식회사 모바일테크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6길 21, 906호 (우정동우적혁신타워)				
7	북구 달천동	214-6	임	15.6	15.6	울산광역시 북구					
8	북구 달천동	214-10	임	61.1	61.1	울산광역시 북구					
9	북구 달천동	892-163	천	106.0	106.0	국(건설부)					
10	북구 달천동	892-165	천	873.0	873.0	국(건설부)					
11	북구 달천동	892-168	천	54.0	54.0	국(건설부)					
12	북구 달천동	892-148	천	8.0	8.0	울산광역시 북구					
합계				1,188.9	1,188.9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19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호계동 665-3 외 1	수동중앙길 6	2026. 9. 21.	2026. 9. 22.	2004. 8. 9.	기존 자연마을인 수동마을 중앙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함
신천동 607-2	매곡1로 73	2026. 9. 21.	2026. 9. 22.	2009. 4. 8.	법정동 명칭 및 매곡로 인근 위치성 을 고려하여 도로명 부여함
신천동 607-5	매곡1로 73-1	2026. 9. 21.	2026. 9. 22.	2009. 4. 8.	법정동 명칭 및 매곡로 인근 위치성 을 고려하여 도로명 부여함
무룡동 561	주림길 152	2026. 9. 21.	2026. 9. 22.	2004. 8. 9.	기존 자연마을인 주림마을에 위 치하여 도로명 부여함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584)에 문의하시거나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199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강성*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10길 22 평창리비에르(110동 90*호)		
점 용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118번지	하 천 명 칭	○ 매곡천
점 용 내 용	○ 공연	점 용 면 적	○ 33.0㎡
점 용 기 간	○ 2026. 9. 27.(일) 14:00 ~ 17:0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200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울산제일일보(주) 임 채 *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310 지암빌딩 *층		
점 용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794-10번지 외 8필지	하 천 명 칭	○ 동천
점 용 내 용	○ 억새밭 걷기 행사장 설치	점 용 면 적	○ 17,217㎡
점 용 기 간	○ 2026. 10. 15.(목) ~ 2026. 10. 17.(토)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269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주)동광개발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강변로 98, 상가동 101호		
점용 위치	○ 신명동 285	노선명	○ 소로2-408
점용 목적	○ 우수관 매설	점용 면적	○ L = 7.0m ○ A(일시) = 14.0㎡ ○ A(계속) = 7.0㎡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